

[청구인] ○○○

[피청구인] ○○보건소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 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 ○○. ○○. 피청구인에게 ○○약국에서 작성한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사항 적발 확인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9조 제1항 제6, 7호를 근거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20○○. ○○. ○○.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를 비공개 근거로 들었는데, 이의 단서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는 예외이고, 청구인은 권리 구제를 위한 민사사건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이므로 위 비공개 사유는 부당하다.

나.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를 비공개 근거로 들었으나, 구체적으로 영업상의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하여 적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비공개 사유 또한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의 △△△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가소○○○○○사건에서 ○○약국에서 작성한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사항 적발 확인서를 문서송부촉탁신청하였으므로 20○○. ○○. ○○. 문서송부서로 이를 회신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였으므로 더 이상 청구인은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 제43조

5. 인정사실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사실, 우리 위원회의 직권조사,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 ○○. ○○. 피청구인에게 ○○약국에서 작성한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사항 적발 확인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 ○○.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 7호를 근거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 ○○. ○○. 인천지방법원 20○○가소○○○○○ 사건에서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사항 적발 확인서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 ○○. ○○.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피청구

인이 위 문서송부촉탁신청에 회신하지 않는 것도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위 문서송부촉탁신청에 대한 회신을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13조 제1항은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에게는 피청구인의 20○○. ○○. ○○.자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피청구인이 20○○. ○. ○○. 해당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거부처분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